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3. 9. 25(목)

관광건설위원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9월 8일, 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(2003. 9. 22)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 건 호)

가. 제안이유
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재해대책기금을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토록 정함 (제3조 제1항)

- 장기에치기금액은 도 지정금고에 예치·관리하도록 하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기금의 사용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되 사용잔액과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·관리하도록 정함 (제3조 제2항, 제3항)
- 기금의 결산보고를 “3월”에서 “80일”로 정함 (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익 수)

-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
- 재해대책기금의 「장기에치기금액」과 「당해연도사용기금액」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붙임서류 :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누계잔액(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)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할 기금액(이하 “장기예치기금액”이라 한다)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(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)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장기예치기금액은 충청북도의 지정금고(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하며,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중 “3월”을 “8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,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(50~70범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)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			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도지사는 누계잔액(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)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할 기금액(이하 “장기에치기금액”이라 한다)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(장기에치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)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장기에치기금액은 충청북도의 지정금고(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하며,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 80일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

제59조(재해대책기금의 운용·관리)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따로 계획을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·관리에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그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고,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·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64조(금고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

(이하생략)

제110조(기금의 운용 등) ①~②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